

I

원예작물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

I. 사업목적

-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 기여 안전 농산물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친환경 채소 고품질·생산기반조성
- 원예작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·고효율 생산 체계 구축

II. 추진방향

- 우리군 전략품목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
-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지원

III. 근거법령

-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

IV.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
2. 지원형태

- 지원형태
 - 내재해형하우스 보조금 60% 자부담 40%

3. 사업대상자

□ 내재해형하우스

-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·특작 재배하려는 원예 농가

4. 지원제외 대상자

-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
- 전년도 사업 확정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
- 허위서류,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

5. 지원제외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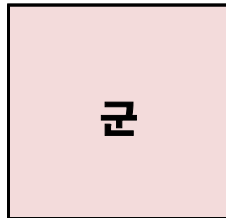
- 단순 일회성(토양개량제, 비료, 농약 등), 소모성 농자재(일반 하우스 비닐, 비닐형 부직포) 및 종자 구입
- 경상경비(ex. 인건비) 관련 비용
- 관정 및 지하수 개발
- 농산물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·기계·장비 구입

6. 지원한도

구 분	지원대상	단위	단가(천원)	비 고
내재해형하우스 설치 (단동)	농업인이상	m ²	25 이하	660m ² 이상 권장 1,980m ² 이하

V. 사업추진요령

1. 사업추진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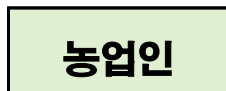
- :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
(단,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)
- :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
- :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

대상자 선정보고, 정산보고 ↑↓ 사업계획시달, 자금교부



- :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, 수요조사 결과 제출
- :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
- :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
- :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

사업신청 ↑↓ 사업확정, 사업비 집행



- : 사업신청, 사업추진, 정산서 제출

2. 사업 추진단계

- 보조비율이 50% 이상 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**2천만원 이상은 입찰대상**(2천만원 이상이라도 보조비율이 50%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)
-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,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
 - 시설·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·설치 지도
-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·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
 -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

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

-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(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)

※ 1사업 1통장 원칙

※ 계좌 거래 원칙(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),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

-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,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『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』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
- 부가세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,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
 - 단,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
- 내재해형 하우스 자재는 SPVHS, SPVHS-AZ 인증 제품만 사용
- 지원대상 기계·장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,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,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 사용
 -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는 시험성적서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성적서 제출(다검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)
 -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제출
 -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, 시설공사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진행(금속구조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등록 업체)
-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

3. 사후관리단계

- 읍·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·장비·기자재 등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」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지원대상자(생산자 단체)별 관리대장을 비치·활용하고, 완료된 시설·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-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, 임의처분,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-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
	부터	까지	
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	시설설치 완료시	10년간	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(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)
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	장비구입시	5년간	

-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『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』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, 행정벌 부과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
 -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(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)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 -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신 청 서

1. 보조사업명
2. 사업소재지
3. 보조금 신청액
4. 자기자본 부담액
5.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6. 사업수행기간
7. 기 타

위와 같이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
성 명

(서명 또는 날인)

※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

○ 확인자 : 소속) 직) 성명) (인)

예천군수 귀하

[별지 제7-1호 서식]¹⁾

사업계획서

1. 사업명 :

2. 사업내용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〇〇년 월 일

주 소 :
성 명 : (인)

예 천 군 수 귀 하

1)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

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○ 사 업 명 :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(개인보조포함)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,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년 월 일

□□□단체 대표 (서명)

□□□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²⁾ 직책 성명 (서명)

예천군수 귀하

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

- 1. 보조사업명 :
- 2. 소요사업비 :
- 3. 사업개요
 - 사업취지 및 목적
 - 사업기간 :
 - 사업소재지 :

4. 추진실적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5. 입금계좌번호 :

불 임 :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.

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〇〇년 월 일

주 소 :
성 명 : (인)

예 천 군 수 귀 하

3)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

사업비 집행 세부내역

1. 사 업 명 :

2. 사업소재지 :

3. 보조사업자 :

4. 사업비집행 세부명세

[illegible]

보 조 금 정 산 서

1. 사 업 명 :
2. 사업기간 :
3. 보조금 집행사항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집 행 액	잔 액	비 고
계				

※ 첨부 :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영수증, 사진대지 등)

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
산서를 제출합니다.

20○○년 월 일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예 천 군 수 귀하

사 업 완 료 확 인 서

1. 사 업 명 :

2. 사업기간 :

3. 사업자

○ 주 소 :

○ 성 명 :

4. 사업완료 확인내역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

20○○년 월 일

확인자) 소속) 직) 성명) (인)

예 천 군 수 귀하

5)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

사 진 대 지

농 가 명
(대표자)

사업장 위치

『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,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』